

교직원 유족 위로금 지급 규정

제 정 : 2009. 12. 1.

개 정 : 2025. 8.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상 재해 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직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보수월액”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보수평균월액을 말한다.
3. “유족위로금”이란 직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말한다.

제3조(유족위로금 지급 심의위원회) ① 유족위로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기획관리처장과 교학지원처장, 원각도서관장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단,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4조(직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직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는 공단의 직무상 재해 인정범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 위원회에서는 아래 각 호를 심의한다.

1. 직무상 사망으로 인한 순직 여부 심의
2. 학교장 실시 여부 심의

제6조(치료비 및 유족위로금 지급) ① 직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할 경우 총장의 결정으로 치료 실비를 교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② 직무상 재해로 인해 질병·장해(이하 “부상 등” 이라 한다)를 당한 경우 공단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의 2~3 및 공무원연금법 제34조~36조, 제42조, 제51조, 제61조 규정에 의함)로 학교 지급액을 같음한다.
③ 직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할 경우 보수월액의 1,300일 분을 유족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단, 1,300일 분의 유족위로금에는 장례비가 포함되어 있다.
④ 직무상 재해로 순직할 경우 보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 제7조(유족위로금 지급 업무)** ① 유족위로금 지급의 주관은 기획관리처 경영지원팀에서 한다.
- ② 유족위로금은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3개월 이내로 계좌이체를 통해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③ 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공제회 등에서 지급되는 재해보상 급여는 유족 측 소유로 본교와는 관련이 없으나, 유족이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본교에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